

제목 : 정의론 14절 ~ 제16절 서면 강의

서면 강의자 : 이한

교재: 정의론(수정판), 황경식, 이학사

정의론 14절

1 이제 제2원칙의 두 번째 부분(이하 ‘후단’이라 한다)을 살펴보자.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이것은 i) 재능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관념과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그것이 업적주의적 사회, 능력주의적 사회meritocratic society로 나아가지도 않는다.

2 왜냐하면 직위의 개방을 요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효율성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홍길동과 같은 서자에게 계속 기회를 안주면 조선 왕조 자체가 퇴락하여 멸망할 것이다”는 식의 논변은 효율성 논변이다. 제2원칙 후단이 그런 “멸망 안돼~”하는 이유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일부 집단에게 개방을 막아버려도 사회는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잘 실현되는 귀족주의 공화정을 생각해 보라. 베네치아 공화국은 그 한 사례를 보여준다. 경제학자 게리 베커의 계산에 따르면, 얼핏 보기에는 시장 효율성에 반하는 차별일지라도 그 희생자의 규모가 적을 때에는, 차별을 가하는 사람은 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현재 흑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2퍼센트를 차지하는데, 백인이 꽤 많은 직장에는 흑인을 고용하지 않는 식으로 차별을 할 경우, 흑인은 당연히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이런 편견을 실행하는 백인에게는 피해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나머지 88퍼센트에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체 사회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으니 거기에서 떨어지는 콩고물로 만족해라”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직위나 직책에서 배제된 집단이 정의롭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효율성은 근본적 이유가 못된다.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획Life plan이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이유에 의해서 부당하게 저지당했다는 데 있다. “변호사가 되고 싶으냐? 이런 지역에서 태어나라. 이런 인종이 되어라. 이런 학교를 나오라.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쏟아부을 정도로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라. 그러지 못했다고? 뭐, 지금 시스템은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으니 그 덕분에 소득이 늘어나서 콩고물 떨어졌으니 만족해!” 이렇게 말하면 로스쿨 못 간 사람이 정의롭게 대우받았다고 느끼는가? 인생의 가치가 돈만으로 구성된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귀족주의적 체제는 완전히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나 유능하고 헌신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서 오는 자아실현의 가치는 돈으로 보상되지 못한다. 리처드 파인먼에게 “대학에 오는 우편물을 분리하고 스탬프를 찍는 작업을 하라. 그러나 돈은 당신이 물리학자로서 완전히 성공했을 대우를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리처드 파인먼이 만족했을 리 만무하다.

3 기본구조는 정의의 일차적 주제다. 기본 구조란 인센티브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아, 이 구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이익이 돌아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공공의 규칙의 체계다. 그래서 그 공공의 규칙의 체계는 소득과 같은 협소한 권한만을 존중해서는 안된다.

4 그렇다면 어떻게 직위, 직책에의 접근 권한을 규명할 것인가? 어떤 접근법이 제일 나은가? 바로 순수 절차적 정의의 방식으로 규명하는 것이 옳다. 순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이는 완전 절차적 정의와 불완전 절차적 정의를 비교해야 잘 이해된다.

① 완전 절차적 정의: 케이크 자른 사람이 여러 사람 중 맨 마지막으로 조각을 집게 하는 절차 같은 것이다. 특징이 두 가지다. i) 공정한 분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있다. (케이크의 경우는 똑같이 자르는 것). ii) 그 독립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줄 절차를 고안할 수 있다.

② 불완전 절차적 정의: 형사재판의 경우, 피고는 자신이 기소charged(번역수정 고발→기소)당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유죄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놈만 유죄 판결이 나는 것이 이상ideal인 것이다. 이 이상이 바로 독립적인 기준이다. 그런데 아무리 주의깊게 법을 적용하고 증거를 살펴서 판단해도 때로는 오판이 있기도 한다. 특징이 두 가지다. i)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은 있다. ii) 그런데 그것을 보장할 만한 절차는 없다. 불완전하게 보장할 절차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도, 과연 기준을 만족시켰는지 아닌지는 잘 알 수 없다)

6 ③ 순수 절차적 정의: i) 올바른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이 없다. ii) 그 대신 바로 공정한 절차가 무엇인지는 안다. 그래서 절차만 제대로 따르면 내용에 상관없이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바로고 공평하다. 순수 절차적 정의는 속임수가 없는 노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된다. 마지막 판 끝난 후 누가 땀고 졌느냐에 상관없이 '공정했다'고 말할 수 있다. 순수절차적 정의가 갖는 독특한 측면은 독립된 실체적 기준 없기 때문에 절차가 제대로 수행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완전 절차적 정의의 경우에는 독립적 기준을 만족시키는 절차 위반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균등한 비옥도의 토지와 균등한 노동력을 가진 농부들이 로빈슨 크루소처럼 먼저 서로 작물을 혼자서 생산하여 매년 추수가 끝나고 생산물을 교환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7 위 농부들의 작물 교환 결과가 공정하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애초에 토지가 균등한 비옥도와 면적으로 배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작물 교환에 협박이나 폭행, 강압이 없어야 한다. 즉, 정의로운 제도의 체계가 '설립'되고 공평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즉, 정의로운 기본구조를 배경으로 해서만 정의로운 절차가 존재한다. 기본구조가 엉터리로 왜곡된 곡물로 배경으로 깔려 있으며 그 뒤에 아무리 생지랄을 해도 계속 왜곡된다. 한국사회에서 노동계급으로 살다 가 수명이 다 되어 돌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임종시에 "그래 나는 공정한 게임을 했어"라고 마지막 말을 내뱉을 수 있는가? 인생이 전체적으로 보아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수단, 기술/자격 자산, 조직 자산의 세 차원이 농경제 사회에서 토지에 대응한다. 이런 자산들이 불균등한 크기와 비옥도로 주어지는가, 아니면 공평하게 주어져서 시작하는가? 어떤 배경은 충분히 평평해서 공평하다고 할 수 있고 어떤 배경은 마치 태양과 같은 중력에 의해 비틀려진 공간처럼 왜곡된 곡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는가? 뭘 갖추면 제대로 된 배경이고 뭘 갖추지 못하면 왜곡된 배경인가? 그건 43절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어쨌든 여기서 기억할 것은 정의로운 기본 구조를 배경으로 해서만 정의로운 절차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불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업적주의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절차'에 의해 경쟁하고 성공했다는 것이 온전한 진술이 못된다. 기본 구조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다.

8 자본주의 게임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분배 결과를 시장 절차에 그대로 내맡겨 둘 수 없다. 즉, 분배는 순수 절차적인 방식으로 도출된 정의의 원칙에 맞추어 나와야 한다. 순수 절차적 정의의 장점은 무엇인가? 무수하게 변하는 다양한 여건과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만약 결과에 대한 독립적인 기준을 가지고 분배 상태를 평가하는 정의론이 있다면(예를 들어 공리주의), 무수하게 다양한

여건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인간의 지위를 계속 추적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현대 자동차 노동자의 권리는 줄어들어야 하고, 검찰 사무직원의 권리는 늘어나야 하고, 소득은 얼마씩 늘어나야 효용이 비슷하게 되고, 이런 것을 세세하게 규정해야 한다. 영철이가 고등학생이었다가, 청년실업 상태에 잠시 빠졌다가, 대학생이 되었다가, 인턴으로 일했다가, 현대 자동차에 취직했다가, 검찰 수사관 시험을 보아서 취직했다가 자꾸 소득과 지위가 변화할 때, 이 변화 하나 하나를 떼어내서 볼 필요가 없다.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개인들의 지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지위 변화 하나 하나를 떼어내어 모든 변화가 그 자체로 정의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p137 마지막 문장을 앞 문장과 같이 수정. 원문: It is a mistake to focus attention on the varying relative position of individuals and to require that every change, considered as a single transaction in isolation be in itself just.) 판단되어야 할 것은 구조 내에서의 변화들이 아니고, 그 변화를 규제하고 틀 지우는 기본 구조의 체제이다.

지금 밥(Bob)은 승진을 했다. 이 승진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지금 메리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었다. 이 당첨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영철이는 피자 가게를 열어서 때돈을 벌었다. 이 때돈이 정의로우냐 정의롭지 않느냐. 수영이는 놀고 먹다가 저소득자가 되었다. 어느 정도 놀고 먹어야 저소득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가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일일이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판단되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 기본 구조의 체제인데, 특히 그것은 구체적이고 특수한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추적해서 체제의 불평등으로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 세계는 넓고 힘든 사람은 많다. 용산 전자상가 상인도 힘들고 의사도 힘들다고 한다. 불평이 많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욕 안먹는 직업집단이 아예 없고, 변명거리 없는 직업집단이 아예 없다. 택시기사에서부터 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로 욕먹고 변명하고 욕한다. 이런 걸 다 다루어서 평가하는 정의론은 너무나 어렵다.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자유를 실제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의 여건에 대한 제도, 즉 기본구조를 제대로 짜 놓고, 그 기본구조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안하는 방향으로 가자. 도박하면서 도박의 룰을 문제삼지 않고, 도박 결과에 대해 매번 검토하는 식의 정의론은 골치 아프고 영양가도 없다.

9 순수 절차적 정의는 이득의 분배가 개인의 욕망에 소용되는 일정량의 이익이 어떻게 돌아갈까를 판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영희가 “나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죽겠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욕구의 강도를 측정해주세요. 그리고 이 욕구를 채워주세요.”하고, 철수는 “나는 전주에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전주에서는 자꾸 집값이 떨어지기만 해요. 전주 집 값도 올려주세요. 절박합니다.”하고 이런 걸 욕망의 세기-욕망의 충족 정도에 의해 계산해서 분배 결과를 도출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런 건 공리주의 스타일이다. 롤즈 스타일은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가 먼저 사회 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나서 최종 분배는 그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면 끝이다. 결국 맨 처음 사회의 근간을 세운 그 절차적 규칙에 들어맞냐 안맞냐를 따라 합당한 legitimate 요구가 무엇이냐가 결정된다.

따라서 롤즈 패러다임에서는 “영희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죽을려고 하고, 철수는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도서관 사서를 하면 만족하는 경우에 어떻게 일정량의 물건을 분배하는 것이 나은가?”라는 대답에 대한 독립적 답이란 있을 수 없다. 공리주의의 경우에는 선호의 강도와 효용함수의 기울기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각 재화 분배의 옵션들 사이의 최종 총효용 합계를 비교하는 식으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을 수 있다. 롤즈의 패러다임은 순수절차

적 정의관이기 때문에 “영희와 철수가 받을 돈고 있는 배경적 구조의 관 자체가 시종일관 공정한 관이냐?” 이것만 묻고 끝이다.

10 순수절차적 정의와는 대비되는 할당적 정의의 관점에서는 배경적 구조가 빠진다. 개인들은 협동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간주되지도 않는다. 또 재화에 대한 선행적인 권한 같은 것도 없다.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시키는 일만이 중요해진다. 평등 자체가 선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p138 ← 마지막 문장 “평등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지 않는 경우에”)를 앞과 같이 고침; 원문 = unless equality is preferred) 정의는 일종의 효율성이 된다. 할당적 입장은 결국 고전적 공리주의의 견해다. 공리주의란 기본 구조를 순수 절차적 정의의 체제로 해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공리주의는 결과를 평가할 독립적인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규칙을 섬세하게 세워도 일상생활의 불가피한 장애와 제한을 받게 되므로 공리주의에서 기본구조의 문제는 마치 형사절차의 경우처럼 ‘불완전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된다.

11 롤즈는 제2원칙의 두 부분은 축차적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축차적 서열이 두 개다. 복문 형식으로 서열 안에 또 서열 있다. 먼저 제1원칙이 > 제2원칙보다 축차적으로 앞서고, 그 당므로 제2원칙 중에서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 부분이 >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된다는 부분보다 서열상 앞선다.

이런 축차적 배열 구조를 가정하고 논의하는 것에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여건 속에서 과연 이 같은 축차적 서열이 선택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이 탐구의 특정한 방향을 제시한다. 공리주의처럼 막연히 정의는 최대 만족 극대화다라는 일반론에 머무르지 않는다. 효율성의 문제에 매몰되어 이 계산법이 옳으니 저 계산법이 옳으니 하지 않고, 사회윤리학의 본분답게 실제 제도를 운용하는 원칙들을 구성하는 분명하고 명석한 개념들을 이리저리 정합성 있게 짜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야, 처리할 수 없는 난점들 없이 간단명료한 원칙들의 체계 위에 사회질서를 세울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더 높아진다. 예를 들어 공리주의가 원리상 그럴듯해 보인다고 해도 이것이 실제 적용되는 공공의 규칙이고 공지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소득이나 지위 변화를 추적하려고 노력하여야 실제로 그 원칙대로 운용될 수 있다면 사회운용의 근본 기준으로서 매우 난망한 놈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의론 15절 <기대치의 근거로서의 사회적 기본가치>

1 정의의 두 원칙을 실현할 제도적 체제는 앞으로 볼 몇몇 장에서 기술하겠다. 그런데 그 전에 우선 다루어야 할 예비적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기대치와 그 평가 방법에 대한 논의다.

2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는 공리주의와 비교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공리의 원칙은 적합한 모든 지위에 걸쳐 기대치들의 산술적 총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람들 간 기수적 효용을 비교할 척도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지만, 공리주의에 대한 진정한 반대는 다른 곳에 있다. 설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러한 비교는 추구할만한 가치들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는 종교를 다 믿도록 강제하고 싶다는 욕심이 충족되는지 아닌지를 기대치 비교에 포함하는 순간, 그 욕구 충족을 추구할만한 가치의 하나로 다루는 것이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을 해

치고 싶다거나,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지배하고 싶다거나, 차별하고 싶다거나 하는 욕구들이 있을 수 있다.

3 차등의 원칙은 개인 간 비교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한다. 첫째로, 최소 수혜자의 대표를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최소수혜자의 기대치를 얼마나 더 낮게 할 것인가만 판단하면 된다. 동일한 사람의 기대치 간 서열만 비교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수적 측정이 갖는 난점은 부딪히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최소수혜자의 대표가 어떤 경우에 더 나아질지, 나아지지 않을지에 대한 결정만 하면 된다’는 밥 아저씨 “참 쉽죠?” 식의 롤즈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이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선택지가 될 수 있는 사회체제별로 보장되는 기본재 묶음도 달리 나오게 되어 개인간 비교는 아니라고 하여도 이들 사이의 비교 역시 간단히 처리할 문제는 가치들 사이의 서열이라는 정교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롤즈는 문단 6에서 보듯이 이를 정의의 두 원칙 자체가 갖고 있는 축차적 서열의 문제로 해결한다. 따라서 그 모든 논의의 건전성은 축차적 서열에서 전제하고 있는 가치들 사이의 서열에 대한 논변에 달려 있게 된다. 강의자의 판단으로는 이러한 서열에 대한 롤즈의 대체적인 논변은 변호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4 둘째, 개인간 비교의 근거를 단순화시킨다. 다종다양한 모든 선호 또는 욕구 충족치로서 기대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가치있는 사회의 기본재(또는 기본 가치 goods이라는 것은 물질적 재화 뿐만 아니라 기회나 자유까지 가리킨다)에 대한 기대치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롤즈의 정의론도 복지 평등론이 아니라 일종의 자원 평등론이다) 기본재란 합리적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욕구를 가진 사람인지 관계없이 무조건 원하리라고 생각되는 것들이다. 사회적 기본가치의 예로 권리, 자유, 기회, 소득과 부, 자존감을 들 수 있다. (자존감에 대해서는 67절에서 다루겠다) 기본재들의 분배는 기본 구조에 의해 규정된다. 예를 들어 소설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충족되느냐 마느냐하는 구체적인 선호 충족의 문제는 기본 구조와는 관련 없다. 반면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구할 공정한 기회를 갖고, 점잖은 삶을 유지할 상당한 소득을 얻느냐 마느냐는 기본 구조와 관련이 있다.

5 왜 이런 기본재만 기대치의 고려 요소로 삼느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에 대한 논의는 제7장에서 보다 충실하게 제시될 것이다. 여기서는 요지만 말하겠다. 어떤 인간의 가치란 적절하게 유리한 여건 아래에서(under reasonably favorable circumstances) 장기적으로 보아 그 인간에게 가장 합리적인 인생 계획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다. 쓸 만한 여러 대안들이 있을 경우 합리적 계획이란 그 이상 개선될 수 없는 계획이다. 이런 합리적 계획에서 꼭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가치들이 바로 기본재이다.

6 몇 가지 난점이 있다. 사회적 기본 가치의 지수 그 자체를 구성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금방 해결된다. 왜냐하면 정의의 두 원칙은 순차적인 서열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 자유 vs 소득 이런 식으로는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최소 수혜자 대표는 자신의 기본적 자유를 소득과 얼마 정도로 교환시킬까 이런 고민 자체를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또, 최소 수혜자 대표 자신이 나아졌느냐 나아지지 않았느냐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기본재 각각의 지수를 너무 상세히 규명할 필요도 없다. 결국 직관이 그 자리를 떠맡게 될테지만 이는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상당히 제한된 범위를 가지고 나서야 도입되는 것이어서 다른 이론에서보다 훨씬 덜 문제가 된다.

7 기대치는 기본재의 지수(a)로는 규정되어서는 안되며 기본재를 사용해서 계획이 실현되는 경우에 기대되는 만족도(b)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결국 행복이라는 결과가 중요하고, 이 결과는 계획 실현 여부에 달려 있지, 그 계획에 소용되는 자원에 달려

있지 않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아닌가하는 반론이다. 그러나 이 반론은, 정의의 문제는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인생계획의 우열을 가려야 판명될 수 있거나, 아니면 비싼 욕구가 강한 놈이 장땡이라는 식의 문제점에 빠지게 된다. 이 문제는 로널드 드위킨이 ‘복지평등론’을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다루면서 충분히 비판하였다. 어쨌든 롤즈 패러다임은 계획의 만족도에 의해서 정의로움을 판명하지 않고, 인생계획에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가치들을 제대로 주고 있느냐에 의해 정의로움을 판명한다. 그리고 이 기본재를 분배하는 기본구조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최종적인 결과가 번덕스러워진다고 해서 별 문제는 없다.

8 결국 롤즈 패러다임에서는 기본재가 무엇이나에 대해 사람들이 합의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그런데 이걸 쉽다. 서로 다른 대표가 자신들 각자의 합리적인 계획을 실현하는 데 누구나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합의할 수 있다. 돈도 필요하고, 자유도 필요하고, 기회도 필요하고, 공정한 대우도 필요하다. 반면에 만족 총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만족을 평가하는 기준에도 합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서로 다른 인생 계획들을 한 가지 척도로 평가하여야만 가능하다. 이는 훨씬 난망한 일이다. 그러니 이 점에서도 롤즈 것이 훨씬 낫다.

정의론 16절

1 정의의 두 원칙을 사회의 기본 구조에 적용함에 있어 우리는 어떤 대표적인 개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이 사회 체제를 보는 방식을 고찰하게 된다. 그러나 물론 모든 사회적 지위가 대표로 들어서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농부에도 낙농업자, 밀 경작자, 보다 넓은 면적에서 일하는 농부 등이 있고, 다른 직업과 집단에서도 무수한 종류가 있기 때문이다. 직능 이익별로 대표를 다 세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렇게 직능별로 쪼갤 필요도 없어 보인다. 낙농업자와 밀 경작자가 구체적인 정책이 아니라 배경적 ‘기본’ 구조에 대하여 합의하는데 무슨 큰 의견차가 있겠는가? 그러면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 필요한 재능이 있는자와 재능이 없는자는 어떤가? 이건 좀 상관이 있을 듯 하다. 그래서 어떤 것이 대표로서 들어갈 기본적 지위냐를 가려야 한다. 어떤 원칙에 의거해서 그걸 가려낼 수 있는냐?

2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의 기본 문제와 두 원칙이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미 강조한 것처럼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적 기본 구조다. 기본 구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작용해서 그 이후 협동체의 이익 분배에서 구조적으로 어떤 출발지가 다른 출발지보다 더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근본적인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배경을 바로잡는데 적실하게 관련 있는 지위를 골라서 사고해야 한다.

3 그러면 그렇게 근본적인 배경을 바르게 논하는데 있어 적실한 두 가지 지위는 무엇인가? 그것은 i) 평등한 시민의 지위와 ii) 소득과 분배에 있어 그의 위치에 의해 규정되는 지위이다. 이 두 가지 지위를 다 가지고 있는 이중적 지위가 바로 적합한 대표의 지위다. 따라서 적합한 대표란 대표적인 시민이며 동시에 불평등하게 분배된 기본재에 대한 차등적 기대치를 갖는 사람들의 대표다.

4 지위i)의 해명: 어떤 지위가 평등한 시민의 지위인가?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를 갖춘 지위다. 그러니 기본적 자유가 어떤 구조

로 이루어질까 하는 문제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어떤 구조가 적당할까를 논의하는 대표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평등한 시민의 지위가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적합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기본적 자유의 문제다. 어떤 것이 적합한 제한(평등한 경계긋기)이고 어떤 것이 부당한 침해(불평등한 경계긋기)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면 원래 그 문제 해결을 내리는 사람들이 평등한 시민의 지위에 있어 상호간의 대등한 권리 창출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기본적 자유를 구획짓는 문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책social policy의 많은 문제들도 평등한 시민의 입장에서 고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재의 문제다. 환경보호에 쓰이는 국가 재정을 얼마나 마련할까, 자전거 도로를 어느 정도 자금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만들까 등등이다. 이런 문제들은 실제적으로는 분배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분배와는 상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들이 소득이 동일하다고 해도 환경보호는 필요하다. 자전거 권장 해야 한다. 댐도 필요하다. 결국 이런 것과 관련된 기본적 구조의 문제는,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와 같은 동일한 공동의 목표를 창출하는 조건을 기본적 제도가 구비해줄 것이냐의 문제다. 이는 가장 타당한 민주주의 구조를 짜는 문제인데, 여기서도 평등한 시민의 지위가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5 지위ii)의 해명: 왜 하필 소득과 부의 분배 불평등으로 지위를 정하는가. 불평등한 소득과 부의 수준은 불평등한 권력과 책임과 연동되어 있다고 가정하기 때문인가.(기본재의 연동가정) 대체로 연동되어 있으니 이 가정 그대로 가겠다. 보다 심각한 문제점은 최소 수혜자 집단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이다.

6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최소 수혜자들을 세 종류로 한번 나눠보자.

- (1) 가족 및 계급적 기원이 못하다.
- (2) 천부적 재능이 열악하다.
- (3) 운수나 행운이 X같다.

우연에 의해 위 기준에서 가장 못한 집단을 최소 수혜자로 생각하면 되겠다.

7 최수 수혜자 집단을 실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떤 임의성은 불가피하다. 최소 수혜자라는 것은 기본구조에서 추상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 세계에서 확인하려면 어떤 포섭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포섭 전략을 쓰는 것이 좋을까?

전략1: 미숙련 노동자와 같은 특정한 사회적 지위를 먼저 선택하여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 및 부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을 최소 수혜자로 간주하는 방식

전략2: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상대적인 소득이나 부를 통해서(예를 들어 중앙값의 절반 이하를 갖는 모든 사람들) 최소 수혜자 층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이 두 기준 모두(either of these definition) 다양한 우연성에 의해 최악에 놓인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 수혜자를 확인하는 어느 전략이건 어느 정도 미봉적일 수 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전략은 없다. 그래서 제시된 전략 가운데서 가장 기본구조를 논하는데 적절한 집단을 짚어낸다고 생각되는 전략을 택하면 된다.

8 원초적 합의에 등장해야 할 다른 지위가 뭐가 있을까? 성별이나 인종, 문화에 의한 구별을 정의의 두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특별히 고려해야 할 기본적 지위라고 할 수 있을까? 롤즈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여기서 헛갈려서는 안된다. 롤즈는 정의로운 사회가 성별이나 인종, 문화에 의한 차별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로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성별이나, 인종, 문화에 의한 구별집단이 그 표지에 의한 불평등을 증가시킴으로써 이익을 보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상대적 소득 표지와 비교해 보자. 상대적 소득 위치가 하위 50%에 속하는 사람은 상위 50%에 속하는 사람과의 불평등이 증가됨으로써 이익을 보는 경우가 혹시 있을 수 있다. 기본재 또는 기본적 선이라고 불리는 것의 절대적인 양이 늘어난다면 그렇다. 물론 통상 이야기하듯이 절대적인 소득수준은 아니다. 왜냐하면 기본적 선에는 자존감이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과의 불평등이 늘어남으로써, 흑인은 백인과의 불평등이 늘어남으로써 그 기본적 선이 더 증대되는 경우는 생각하기 힘들다. 따라서 성별이나, 인종, 문화에 의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이미 무지의 베일을 통해 도출된 제1원칙에 의하여 이미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차등의 원칙과 관련하여 대표자에 포함되는 기본적 지위로서 특별히 추가될 이유는 없다고 하겠다.

9 기본구조를 결정하는 대표직에 적합한 지위의 관점에서 이루어진 판단은 보다 특정한 상황(무지의 베일을 벗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주장하기 쉬운 요구를 무효화하고 그보다 **우위에** 선다.(override) 특수한 지위에 이미 처해 있음을 알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이 두 원칙이 요구하는 바에 의해 이익을 받는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미 게임 결과가 나오고 나서 게임의 룰의 공정성을 논하는 셈이어서 게임의 결과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사람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적합한 지위의 관점이 우선성을 갖지 못하면 각종 먹고 살기 힘들다, 내 요구가 정당하다, 이런 소리만 많아질 뿐이다. 따라서 정의의 두 원칙은 결국 우리의 이해관계 중 일부에 어떤 특별한 비중을 부여함으로써 그것들의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동의를 나타내고 있다.(Thus the two principle express in effect, and understading to order out interest by giving certain of them a special weight, p150 6째줄 번역수정) 한마디로 요구라고 해서 다 정의의 관점에서 같이 고려되어야 할 요구가 아니라 합당한 요구, 대표직 지위의 관점에서 판단하기에 고려할 만한 요구가 정의와 관련 있는 요구라는 것이다. 단순히 내가 지금 이런 위치에 있으므로 지금 뭐를 하고 싶다, 내가 자본가이므로 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싶다, 비정규직 많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것은 타락한 공리주의의 관점에서나 고려되어야 할 요구다. 다만 비정규직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역시 그것이 대표직에 적합한 지위의 관점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특수한 지위에 이미 처해 있어서야만 나올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다.

롤즈는 특정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무역을 반대하고 보호무역을 주창하는 일을 예로 들고 있다. 이런 경우 경쟁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요구들을 어떻게 정의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까? 롤즈의 답은 간단하다. 최소 수혜자의 관점에서 보면 된다는 것이다.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일도양단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일단 자유무역이 전체 소비자의 혜택을 보호무역이 그 산업에 혜택을 준다고 가정하고 던진 가상적 질문임을 유의하자)

이런 식으로 적합한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인 관점을 명시하게 되고 이로부터 정의의 두 원칙이 기본구조에 적용된다.

